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 또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8년 일몰 종료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고·수입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바목 및 파목 신설)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

나.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기간 연장 등
(안 별표 2)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2018년까지에서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10%p ~ 3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중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2.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3. 별표 6에 따른 종류 및 재질별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양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가. 발포합성수지재질의 경우: 0.8톤

나. 유리병의 경우: 10톤

다. 그 밖의 종류 및 재질의 경우: 4톤

4. 별표 6에 따른 종류 및 재질별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양 미만인 수입업자

가. 발포합성수지재질의 경우: 0.3톤

나. 유리병의 경우: 3톤

다. 그 밖의 종류 및 재질의 경우: 1톤

제21조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를 “재활
용의무생산자”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7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
지”를 “2019년도분”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비
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7호(중전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분”을 “구분 및 제6호”로 한다.

6.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
간 매출액 200억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도분부터 2021
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연간 매
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고, 30억원 이

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며,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추가 감면한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60퍼센트) +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30퍼센트)

별표 4와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종이팩·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료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2.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발포합성수지 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에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4.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의 제조업 및 수입업
5. 합성수지재질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6.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7.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8. 제18조제3호의2,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9.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의 제조업 및 수입업

※ 비고

1. 제1호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란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2. 제2호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수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제3호에서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료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을 말하고, 제1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제2호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은 제외한다.

4. 제4호에서 "농수축산물 상자"란 제2호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농수축산물 상자를 말한다.

5. 제6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이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형 종합 소매업을 말한다.

6. 제6호의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형 종합 소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100	200	300
라. 법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3	100	200	300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		30	50	100

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				

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바.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아.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1호 법 제41조제3항 제1호 법 제41조제2 항제4호 법 제41조제2 항제5호	50 30 10 5 500 50 50 100 50 30	100 50 30 10 700 70 150 200 100 50	200 100 50 30 1,000 100 300 300 200 100
--	---	--	--	---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10	30	50
차.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	50	100	300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항제6호			
카.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	50	150	300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	항제6호의2			
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타.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	200	250	300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항제7호			
파.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41조제1항	500	700	1,000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제2호			
한 경우				
하.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	200	250	300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	항제7호의2			
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거.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법 제41조제3	30	50	100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항제2호			
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너.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법 제41조제2			
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	항제8호			
행하지 않은 경우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경우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		150	200	300
더. 법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41조제2	200	250	300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	항제9호			
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경우				

러.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 항제10호	100	200	300
며. 법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 항제11호	50	150	300
버.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41조제2 항제12호	100	200	300
서. 법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 항제13호	100	200	300
어. 법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 항제14호	100	150	200
저. 법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 항제15호	100	200	300
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 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 우	법 제41조제2 항제16호	100	200	300
커.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3 항제3호	50	70	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은 별표 4와 같다. <u><신 설></u>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중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판

	<u>매업자</u> <u>2.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u> <u>미만인 수입업자</u> <u>3. 별표 6에 따른 종류 및 재질</u> <u>별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다</u> <u>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양 미</u> <u>만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u> <u>가. 발포합성수지재질의 경</u> <u>우: 0.8톤</u> <u>나. 유리병의 경우: 10톤</u> <u>다. 그 밖의 종류 및 재질의</u> <u>경우: 4톤</u> <u>4. 별표 6에 따른 종류 및 재질</u> <u>별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다</u> <u>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양 미</u> <u>만인 수입업자</u> <u>가. 발포합성수지재질의 경</u> <u>우: 0.3톤</u> <u>나. 유리병의 경우: 3톤</u> <u>다. 그 밖의 종류 및 재질의</u> <u>경우: 1톤</u>
제21조(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3 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 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 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제21조(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4 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 -----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이라 한다)이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
 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회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포장재
 의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
 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1 - 7396